

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(제18조제1항 관련)

1. 시설기준

구분		개수	단위면적 (㎡)	총면적 (㎡)	비고
가. 환자분류소		1			- 환자진입구와 인접하여 설치할 것 -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갖추어 것 -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- 감염병 의심환자를 위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비치할 것
나. 응급환자진료구역	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	1	55	55	10병상(음압격리병상 및 일반격리병상을 포함한다) 이상을 확보할 것
	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		27.5	27.5	5병상(음압격리병상 및 일반격리병상을 포함한다) 이상을 확보할 것
다. 음압격리병상		1			-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될 것 - 필터링된 급기·배기, 음압제어 및 환기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 것 -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-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-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거나 손세척을 할 수 있

			는 전실을 갖출 것
라. 일반격리병상			•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폐될 것 •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•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• 음압격리병상 또는 일반 격리병상을 1병상 이상 갖출 것
마. 검사실	1		• 24시간 혈액 성분 및 화학 검사, 동맥혈가스분석, 요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것. 다만, 병원의 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실을 두지 않을 수 있음
바. 처치실	1		• 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구분된 공간일 것
사. 원무행정실	1		• 일반환자용 원무행정실도 사용 가능함
아. 의사당직실	1		• 의사 1명 이상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일 것
자. 보호자대기실	1		• 10명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대기의자, 호출시설 등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할 것
차. 주차장			• 구급차 1대를 포함한 2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

				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할 것
--	--	--	--	----------------------

비고: 위의 개수·단위면적 및 총면적 기준은 최소기준을 의미함.

2. 인력기준

구분		인력기준	비고
가. 의사	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	• 응급실 전담의사 2명 이상	• 24시간 응급실 전담의 사 또는 병원 당직의사 중 1명 이상이 근무할 것
	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	• 응급실 전담의사 1명 이상	
나. 간호사	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	• 응급실 전담간호 사 5명 이상	• 24시간 응급실 전담 간호사 2명 이상이 근 무할 것
	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		• 24시간 응급실 전담 간호사 1명 이상이 근 무할 것
다. 그 밖의 인력		•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 는 경비원 등의 보 안인력 1명 이상	• 보안인력은 24시간 1 명 이상이 상주할 것 (응급실 이외 의료기관 의 보안업무 겸임이 가 능함)

3. 장비기준

구분	기준
가. 심장충격기	1대 이상
나. 인공호흡기	1대 이상
다. 주입기(Infusion Pump)	5병상마다 1대 이상
라. 환자감시장치	5병상마다 1대 이상
마. 부착형흡인기	1병상마다 1대 이상
바. 부착형산소(Wall O ₂)	1병상마다 1대 이상

unit)	
사. 일반 X-선 촬영기	1대 이상
아. 특수구급차	1대 이상. 다만,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음
자.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 설	응급의료지원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 급의료정보의 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출 것